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교학 및 학생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외국인 교환학생’(이하 '교환학생'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교간의 교류협정이나 학생교환 협정에 의하여 교환되어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한국어 연수학생’이라 함은 글로벌어학교육센터장의 입학허가를 받아 글로벌어학센터에서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 교환학생) 외국인 교환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한국어 연수학생) 국제교류교육원의 학사운영세칙에 의한다.

제5조(교육과정편성) 유학생의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학사 관리)

- 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 운영 규정에 따른다.
 1. 등록 및 수강신청
 2. 교육과정 이수 및 시험, 성적 평가
 3. 출석과 결석
 4. 전과,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 ② 외국인 학생의 졸업 시 어학능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 요령’을 적용한다.
- ③ 어학연수생은 국제교류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 ④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제교류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되 학점인정은 되지 않는다.
- ⑤ 외국인 유학생의 휴학, 자퇴,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혜택)

- ① 성적장학금은 본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 ② 성적장학금 이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학생활 및 체류관리 지원)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및 체류관리를 지원한다.
 1. 신입학생에 대한 대학생활 오리엔테이션
 2. 신입학생에 대한 학교 기숙사 우선 배정
 3. 학업, 체류, 건강 및 기타 애로사항에 대한 수시 상담(전담부서 지정)
- ② 외국인 유학생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

제9조(출입국 관리)

- ① 국제교류교육원은 유학생과 교환학생 및 한국어 연수학생의 출입국 관리를 해야 한다.
- ②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적용한다.
- ③ 학과에서는 유학생이 10일 이상 무단결석 시 그 사실을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교류교육원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학생의 권익 및 준수사항)

- ① 유학생 및 한국어 연수생은 우리대학의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진다.
- ② 유학생은 우리대학에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2. 유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3. 재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및 출입국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9.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